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호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창원시의회 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정비하고,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 등을 도서관의 업무로 부여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나.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 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라. 도서관의 각 호의 업무를 정비하고,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
-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바. 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사. 이용, 회원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9조)
- 아. 소장 자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제13조 및 제15조)
- 자. 운영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
- 차.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및 안 제23조)
- 카. 별표 1의 제목을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	-----

발의연월일 : 2023. 1. 6.

발 의 자 : 이우완·김경수·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상현
김영록·김현일·문순규·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심영석·안상우·오은옥·이원주·이종화
이찬수·전홍표·정순옥·진형익·최은하·한상석
한은정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정비하고,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 등을 도서관의 업무로 부여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나.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 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 라. 도서관의 각 호의 업무를 정비하고,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

- 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바. 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사. 이용, 회원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9조)
- 아. 소장 자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제13조 및 제15조)
- 자. 운영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6조)
- 차.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7조 및 안 제23조)
- 카. 별표 1의 제목을 개정 조문에 맞게 정비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법령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창원시립도서관”을 “창원시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관”이란”을 ““시립도서관”이란”으로,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창원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회원”이란”을 ““도서관회원”이란”으로,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을 “대출과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등록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명칭 및 소재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창원시립도서관(이하”를 “창원시 시립도서관(이하”로, “위치”를 “소재지”로 한다.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에 관한 사항
8.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유관기관 협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시설, 관련 단체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7조의3으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문화창달 및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책 읽는 창원과 관련된 시민독서운동 추진 행사
2. 북 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4. 문화강좌, 작가특강, 인문학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의2(이용 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중전의 제7조) 제1항제3호 중 “책임 하”를 “책임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3(중전의 제7조) 제2항제1호 중 “해치”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3. 도서관자료·시설물 등을 분실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의 제목“(회원)”을“(도서관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의 회원”을 “도서관회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서관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9조제2항 중 “대출”을 “도서관자료의 대출”로, “회원”을 “도서관회원”으로, “경우에는 미리”를 “경우 미리 부서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귀자료, 고서 또는 시장이 대출을”을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부서장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을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을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염·훼손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 및 제적의”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로, “별표 1의2 제3호”를 “별표 7”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서관”을 “시장은 도서관”으로, “전문강사”를 “외부강사”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위원회는”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5.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의 제목 “(간사)”를 “(간사 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창원중앙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50(반송동)	
성산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 47(남산동)	
상남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10(가음정동)	
최윤덕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7	
고향의봄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35번길 32(서상동)	
명곡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21(명서동)	
마산합포도서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6길 22(해운동)	
마산회원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58(회원동)	
내서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79	
진해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여좌동)	
동부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66(용원동)	
진해기적의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석동)	

현행	개정안
<p><u>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창원시립도서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서관</u>”이란 「<u>도서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u>창원시</u>(이하 “<u>시</u>”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u>도서관자료</u>”란 <u>법</u>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4. (생략) 5. “<u>회원</u>”이란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도서관자료를</u> 대출하기 위하여 <u>도서관</u>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p>제3조(명칭 및 위치) <u>창원시립도서관</u>(이하 “<u>도서관</u>”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p>	<p><u>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창원시 시립도서관</u>-----.</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립도서관</u>”이란----- <u>제3조제1호</u> <u>창원시</u>-----. 2. ----- <u>법</u> 제3조제2호-----. 3. 4. (현행과 같음) 5. “<u>도서관회원</u>”이란 ----- <u>대출과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등록한</u>-----. <p>제3조(명칭 및 소재지) <u>창원시 시립도서관</u>(이하----- <u>소재지</u>-----.</p> <p>제4조(업무) -----</p>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7.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5조(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독서인구 증가와 시민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

-----.

1. (현행과 같음)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
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4. (현행과 같음)
5.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
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
최 또는 장려
6. (현행과 같음)
7.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
에 관한 사항
8.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유관기관 협력) 창원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시설, 관
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한다.

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화강좌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독서문화진흥 행사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문화창달 및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행사 등의 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책 읽는 창원과 관련된 시민독서운동 추진 행사
2. 북 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4. 문화강좌, 작가특강, 인문학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6조 (생략)

<신설>

제7조(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2. (생략)
-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 4.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 1.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의2(이용 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
-----.

- 1.·2. (현행과 같음)
- 3. ----- 책임하-----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1. -----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 3. 도서관자료·시설물 등을 분실·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

제8조(회원)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생략)

② 대출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 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 고서 또는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자료의 기증) 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도서관회원) ① 도서관회원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
----- 도서관회원-----
----- 경우 미리 부서장의 -----.

③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부서장의 -----
-----.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
-.

제13조(자료의 기증) ① -----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에 따른다.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 설>

-----<후단 삭제>

②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

----- 이용 가치
가 없거나 오염·훼손된 -----
-----.

② -----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
----- 별표 7-----.

제16조(운영요원 등) ① 시장은 도서관-----
외부강사-----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신설>

제23조(간사) ①·② (생략)

■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창원중앙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50(반송동)	
성산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 47(남산동)	
상남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원아대로 810(가음정동)	
최윤덕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7	
고향의봄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35번길 32(사상동)	
명곡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21(명서동)	
마산합포도서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6길 22(해운동)	
마산회원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58(회원동)	
내서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79	
진해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여좌동)	
동부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66(용원동)	
진해작의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석동)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

- 심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

제23조(간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명칭 및 소재지(제3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창원중앙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50(반송동)	
성산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외리로 47(남산동)	
상남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원아대로 810(가음정동)	
최윤덕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서로 67	
고향의봄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35번길 32(사상동)	
명곡도서관	창원시 의창구 서곡길 21(명서동)	
마산합포도서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16길 22(해운동)	
마산회원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558(회원동)	
내서도서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79	
진해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여좌동)	
동부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66(용원동)	
진해작의도서관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70(석동)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5. 생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을 협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 ⑧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보호·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도서관법 시행령

- 제33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
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
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지원
6. 창원 지역서점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